

2009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해설 및 정답

(김종석, 베리타스M 행정법전임)

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②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 ③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는 행정법 관계에서의 원칙적인 시효기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관세법 제22조 제2항 ③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 민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세 등의 ‘납입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강제징수의 절차 중 ‘독촉’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④ 대판 1993.7.27, 92다49973 ; 대판 1994.3.22, 93다56220 등

<답> ③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 ②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에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도로로부터 10m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해설>① 옳음 ②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제한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포괄적 위임의 금지의 원칙 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

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7, 2000두7933) 【판매사업불허가 처분취소】 ④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1998. 9. 25, 98두7503)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답> ②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행정행위의 재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6.2.25, 85누664)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② 재송취소의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된다. ③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입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④ 직권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다수설은 ‘하자의 효과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부담적 행정행위는 원칙상 소급하는 것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강박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답> ④

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 ① 개별적·구체적 규율
- ② 개별적·추상적 규율
- ③ 일반적·구체적 규율
-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해설> 설문은 일반처분의 내용이다. 일반처분이란 불특정 다수인(일반적)에 대한 특정사건의 규율(구체적)을 말한다. 즉, 관련자의 범위는 일반적이거나 규율하는 사건은 구체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통설은 일반처분을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답> ③

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③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해설>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2005.7.8, 2005두487)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답> ①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① 옳음 ② 옳음(대법원 2000.9.8, 99두11257)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2000두8226)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④ 옳음(대법원 2007.4.12, 2005두1893 판결 등)

<답> ③

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 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 ③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 ④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해설> ① 옳음. 즉, 집중효란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옳음. 집중효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들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동 사업계획의 승인에 집중시킴으로써 별도로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③, ④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답> ④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 ②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 ② 동법 제38조 ③ 동법 제38조의2 ④ 동법 제24조 제2항

<답> ①

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해설>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즉,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이유제시를 아니할 수 있다.

<답> ①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에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③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정보열람청구권) 및 제14조제1항(정보정정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④ 제12조제1항(정보열람청구권) 및 제14조제1항(정보정정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답> ③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동법 제7조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동법 제15조 제1항

<답> ②

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행한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10.28, 94누5144). ②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범위 및 내용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4.10.28, 94누5144).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9.14, 90누2048). ④ 행정대집행법 제5조

<답> ①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

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① 옳음 ② 종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처분권내재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는 없고, 행정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와는 별도로 당해 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집행벌)·직접강제 및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력한 강제집행수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개별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장태주, 행정법개론 제7판, 516면~517면 참조). ④ 건축법 제80조 제6항

<답> ②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행정작용 중 권력작용·관리작용·국고작용의 어느 범위까지를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이 포함된다는 광의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7.11, 99다24218). ③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 모두 포함된다. ④ 적극적 손해인가 또는 소극적 손해인가, 재산상의 손해인가 또는 생명·신체·정신상의 손해(위자료)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답> ④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행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ㅁ

<해설> ㄱ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며, 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이 되고, ㄹ은 각하재결을 하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답> ③

1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 ④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행정소송은 법률적 쟁송의 문제, 즉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제외되는 행위이다. 취소소송의 경우 소의 대상(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한다. ④ 법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성을 갖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답> ④

17.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④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사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처분 등은 그 위법상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가진 채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있어서만 허용될 뿐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정판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답> ①

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③ 청소년유해매체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된다.
- ④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④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한다(대법원 1993.1.15, 92누12407 등). ①, ②, ③은 옳은 지문이다.

<답> ④

19. 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이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② 갑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 ① 학설과 판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특허로 본다. 특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

위(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②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④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답> ①

2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 ②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처분이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후 처분청 스스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인 반복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12.11, 90누3560).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답> ②